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1
----------	------

발의연월일 : 2013. 11. .

발 의 자 : 이재병, 차준택 의원

(찬성자 : 7 인)

## 1. 제안이유

- 가. 부평지역의 개발 가능한 토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반환될 미군부대는 18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미조성 토지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 나. 완성도 높은 부지활용 대안을 만들기 위해 민·관 협의체인 「시민참여협의회」의 기능·구성 등을 강화하여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 함.

## 2. 주요내용

- 가. 미군부대가 존재했던 역사성과 장소성을 부각하여 시민들로부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명 변경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신설(안 제3조제6호)
- 다. 시민참여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구성 인원을 35명으로 10명 증원(안 제4조제1~3항)
- 라. 위원 해촉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 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각각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민·관 협의체인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이하“협의회””를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로, “협의 조정한다”를 “심의 의결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제4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25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평구 반환공  
여구역”을 “반환공여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  
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때
3.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
4.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제6조제1항 중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  
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협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제2조(정의)</li> <li><input type="checkbox"/>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li></ul>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결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결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함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 현행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4. “종합계획”이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9>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1명과 행정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협의회를 관연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및 부평구 의회 의원
2. 도시계획·건축·문화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부평구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회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협회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협회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첨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시민참여협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구성 인원을 35명으로 10명 증원(제4조제1항)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발의한 의안이 시행 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비용예상 : 10명 × 70,000원 × 5회(년) = 3,500,000원

### 4. 작성자 : 건교위원회 이 재 병 의원

[별첨 3]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 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 의회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 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u>반환공 여구역 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민·관 협의회체인 인천광역시 부평미군 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u>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u>부평미 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협의 조정한다.</u></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u>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 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u>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u> ----- ----- <u>인천 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 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u>----- ----- ----- ----- -----</p> <p>제3조(기능) ----- <u>캠프마 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 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이하 “위원회”</u> ----- ----- <u>심의 의결 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 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u></p>

대한 의견청취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1명과 행정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협의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 3. (생략)
- 4. 부평구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

<신설>

제4조(구성) ① 위원회-----  
----- 35명 -----  
-----.

② 위원회의 -----  
-----  
-----  
-----.

③ ----- 위원회-----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반환공여구역 -----  
-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③ (생략)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협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

4.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위원회의 -----  
-----.

② 위원회의 -----  
-----  
-----  
-----.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  
-----.

② ----- 위원회-----  
-----  
-----  
-----.

③ -----  
위원회의 -----.

④ -----

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  
-----.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  
-----  
-- 위원회-----  
-----.

② -----  
-- 위원회의 -----  
-----.

③ -----  
----- 위원회  
의 -----  
--.

제11조(운영세칙) -----  
----- 위원회의 -----  
----- 위원회  
의 -----  
--.